#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6

발의연월일: 2020. 8. 4.

발 의 자:노웅래・김남국・전혜숙

윤재갑 • 이병훈 • 안호영

장철민 · 양정숙 · 김승남

윤미향 • 아주진비 • 오영훈

의원(12인)

#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는 자발적 인력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워 법적 강제성을 띤의무고용비율만이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임.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만 해당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국가와지자체,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의 경우 3.1%에 불과함. 19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의무율을 적용했을 때 장애인의 확장 실업률은 18.6%로 전체 확장 실업률 12.1%를 크게 상회하고있음.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 장애인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

해 주고자, 향후 5년간 의무고용률의 점진적 단계적 상향을 통해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리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존중하고,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쳤음.

# 주요내용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이하를 올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27조, 제28조의2 및 제79조).

-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5
-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 3. 2024년 1월 1일이후 1천분의 38

#### 법률 제 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17년"을 "2021년"으로, "2018년"을 "2021년"으로, "32"를 "3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이후"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4"를 "3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이하는 올린다.
- 3. 2024년 이후 : 1천분의 38

제28조제1항 중 "버린다"를 "올린다"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버린다"를 "올린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17년"을 "2021년"으로, "2018년"을 "2021년"으로, "32"를 "35"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19년 이후"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4"를 "36"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4년 이후 : 1천분의 38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버린다"를 "올린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17년"을 "2021년"으로, "2018년"을 "2021년"으로, "29"를 "3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이후"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4"를 "3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4년 이후 : 1천분의 38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 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 2021년-----2021년-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36 3. 2024년 이후 : 1천분의 38 <신 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 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 | 무) ①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 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 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 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번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한 검률」에 따른 출자기관한 경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소수점 이하는 <u>버린다</u>.

올	
<u> -</u> 린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특례)	
<u>올린다</u> .	

- 1. <u>2017년</u> 1월 1일부터 <u>2018년</u>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 <신 설>

-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 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1. <u>2017년</u> 1월 1일부터 <u>2018년</u>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
  -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신 설>

②·③ (생 략)

1. <u>2021년</u>	<u>2021년</u> -
	<u>35</u>
2.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6
제79조(국가와 지병	<del>.</del>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 _ , , ,
	·
<u>올린다</u> .	
1. <u>2021년</u>	<u>2021년</u> -
	<u>35</u>
2.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u>12월 31일까지</u>	<u>36</u>
3. 2024년 이후 : 1천	천분의 38
②・③ (현행과 같음	<u>)</u>